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 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## 1. 의결주문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19. 12. 16. ~ 2020. 1. 28.) 결과, 특기할  
사항 없음

##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사회보장정보원(이하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”를 “한국사회보장정보원(이하 “한국사회보장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을 각각 “한국사회보장정보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“지정하여야”를 “지정해야”로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,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) 법 제2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<u>사회보장정보원(이하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이라 한다)</u>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<u>사회보장정보원</u>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<u>사회보장정보원</u>에 위탁한다.</p> <p>제8조의2(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</u></p>	<p>제3조(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 (이하 “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의2(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</u></p>
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,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.

⑤·⑥ (생략)
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,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2명 -----  
-----  
----- 지정  
해야 -----  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01